

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 기준

□ 비수도권 지역인재 정의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 범위

-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 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 학교’
 - 「고등교육법」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(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‘대학알리미’ 사이트 상의 학교 정보 조회 등을 통해 분교 해당 여부에 대해 지원자가 반드시 확인*)
 - * 예시: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
 -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 -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-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 -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 -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나 그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이원화캠퍼스(제2캠퍼스) 대학
 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 -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 -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□ 기타 2개 대학 이상 졸업자 등은 아래 기준을 따름

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
- 지방소재 학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

<예 시>

<서울소재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>

-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 졸업 : 해당
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(예정) : 해당

<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
-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해당
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해당

※ 단,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

<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>

- 서울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지방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지방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서울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<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
- 지방대학 중퇴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해당
- 서울소재대학 중퇴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해당

※ 단,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

<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>

- 지방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의 경우 : 해당
- 서울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의 경우 : 비해당

<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>

-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